

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

□ 1차전형(필기) 합격자 [100점 만점+(가점)]

- 필기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1차 전형 합격자를 선발
- 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

□ 2차전형(서류) 합격자 [서류적부심사]

- 1차전형(필기) 합격자 중 자격요건 적합자 선발(적/부심사)

□ 3차전형(직무수행능력PT면접) 합격자 [200점 만점+(가점)]

- 3차전형 점수+1차전형 점수 합계점수 고득점 순
- 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- NCS성격검사도 병행 실시, 미 응시자는 4차전형 대상자 제외

□ 4차전형(역량면접) 합격자 [300점 만점+(가점)]

- 4차전형 점수+3차전형 점수+1차전형 점수 합계점수 고득점 순
- * 법률상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초과할 수 있음

□ 전형단계별 동점자 처리기준

- 《1차전형 동점자》 1차전형 필기시험 점수 → 법률상 가점 → 특별가점 → 기타가점 점수 순
- 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- 《3차전형 동점자》 직무수행능력PT면접 점수 → 법률상 가점
- 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- 《최종합격 동점자》 법률상 가점 대상자(취업지원대상자) → 4차전형(역량면접) → 3차전형(직무수행능력PT면접) → 1차전형(필기) → 인정 경력일수 연장자 순
- *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

□ 과락제 적용 기준

- (대상전형) 1차 직무전문지식평가 필기, 3차 직무수행능력 PT 면접, 4차 역량면접에 각각 적용
- (과락기준) 각 전형의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각 전형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

※ 모든 점수는 각 단계별 소수점 셋째짜리 이하 절사